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당음료부담금 신설〉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68호)

2026. 4.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가당음료부담금 신설(안 별표 제9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2. 13.

다. 회 부 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가당음료부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4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당류의 과다섭취를 억제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가당음료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부담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가당음료부담금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를 말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부담금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의4(가당음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가당음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 당 225원

2.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 당 300원

②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가당음료의 용량과 산출된 가당음료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가당음료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가당음료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5(가당음료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의 납부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당음료제조업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가당음료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당음료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의6(가당음료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
13.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
1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당음료제조업자등으로부터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가당음료부담금(안) 개요]

- (목적)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
- (부과대상)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당음료제조업자등)
- (귀속) 국민건강증진기금
- (부과금액)
 - 가당음료에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5그램 이상 8그램 미만인 경우 1리터 당 225원
 - 가당음료에 첨가당 함량이 100밀리리터 당 8그램 이상인 경우 1리터 당 3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22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22조제2항)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부담금 2. <u>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신설)</u>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용도 (안 제25조제1항)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u>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신설)</u> 13. <u>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신설)</u> 1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당음료’란 설탕,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료를 의미함. 최근 식습관의 서구화와 가공식품 소비 확대에 따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국민 개인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보건교육이나 홍보 위주의 영양개선 사업 방식만으로는 가당음료에 노출된

현대인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질병의 원인 인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액상 형태의 당은 고체 식품보다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간과 췌장 등 대사 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액상 형태의 가당음료 섭취를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병률을 급격히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음.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12월 발표한 제9기 3차년도(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202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50그램 미만)를 초과하였으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64.7그램에 달해 미래 세대의 건강 지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제조사의 성분 배합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과도한 당류 섭취로 유발되는 각종 만성질환은 지역 및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켜 건강보험 재정 및 공공의료 자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환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전용 재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가당음료의 소비를 억제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확보된 재원을 비만 및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연구사업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려는 방안으로서 가담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²⁾.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³⁾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가당음료부담금은 당류의 과다섭취를 억제하여 비만·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6년 1월 대통령이 직접 ‘설탕부담금’ 형식을 통한 건강 증진 및 공공의료 재투자 구상을 제시한 만큼, 가당음료부담금 신설은 국민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본연의 목적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부담금은 단순한 재원 조달 기능을 넘어 당의 과다섭취 억제를 통한 국민의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교정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적 취지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시 정책 목적과 실제 운용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고열량 식품이나 인공감미료 음료로 소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⁴⁾, 개정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납부 의무자는 가당음료제조업자등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과 요율의 경우 함량 5g 이상 8g 미만인 경우 리터당 225원, 함량 8g 이상인 경우 리터당 300원으로 첨가당 함량에 따라 구간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특히, 이러한 차등 요율 체계는 소비자의 행태 변화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제품 저당화’ 전략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7호에서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가당음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과세 대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시행령 마련 시 음료의 종류 및 예외 대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당 과다 섭취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다수 국가가 가당음료세를 도입 중⁵⁾이며, 제22대국회에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5) 주로 소비세 체계를 따르나 일부는 부담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32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현행 개정안의 부과요율이 해외사례 및 유사 개정안의 부과요율(또는 세율)의 수준과 비교하여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대표적 가당음료인 콜라 1캔(330ml, 당 10.8g/100ml 함유)를 기준으로 적용 요율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음.

[콜라 1캔에 적용되는 부과요율(세율) 수준 비교]

음료	금액	김선민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해외 사례			
				영국	프랑스	멕시코	태국
330ml 콜라 당함량 10.8g/100ml	ℓ 당 적용요율	300원/ℓ	110원/ℓ	£0.259/ℓ	€0.356/ ℓ	3.08 MXN /ℓ	5 THB/ℓ
	부담금 (세액)	약 99원	약 36원	약 169원	약 203원	약 85원	약 77원
	소매 판매가액	약 1,000~2,000원		약 2,975원	약 2,164원	약 1,260원	약 752원

주: 적용 환율(2026.2.11.): 1GBP 1,983원, 1EUR 1,731원, 1MXN 84원, 1THB 47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39호(2026.02.27.)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원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징수된 재원을 비만 예방 연구 및 필수 의료 사업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에서 정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 목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음료 특성상 서민 경제에 역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저소득층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 부담금 도입 시 당류 소비 감소 폭이 고소득층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질병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음.⁶⁾ 따라서, 경제적 역진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강 지표 개선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징수된 재원을 저소득층의 영양 개선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환류하는 등 정책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의 가당음료부담금은 현행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과 부과 대상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⁷⁾

다만, 가당음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6)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 (2024),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보도자료(2026.1.30.) 등

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이하 생략)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일반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특성이 있음.

가당음료 소비는 비만 및 만성질환을 유발하여 공공 보건 자원의 소모를 초래하는 원인 인자로 작용하는 만큼, 일반 납세자 전체보다는 건강 위해 요인을 제공하는 특정 집단에게 경비를 분담시키는 부담금 방식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추진함으로써 확보된 재원을 일반 재정이 아닌 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환류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⁸⁾, 개정안은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 예방 및 필수 의료 강화는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단기적 존속기한 설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주기적인 운용 평가를 통해 가당음료 소비 행태의 변화 및 국민 건강 지표의 개선 여부에 따라 부담금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⁹⁾을 제시하고 있음¹⁰⁾.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본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인 ‘가당음료제조업자등’은 설탕·시럽 등 첨가당이 함유된 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당류 섭취 행태와 영양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자 집단으로서, 일반 식품 제조자나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특정 집단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부담금의 용도인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연구 등은 당류 과다 섭취를 유발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납부자 집단의 경제적 활동과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

9)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0)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됨.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가당음료의 과다 소비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여 국가 건강보험 재정 및 공공 보건 자원의 소모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당 위해요인을 제공하는 주체에게 예방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것은 집단적 책임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조성된 재원이 비만 예방 및 국민 건강 지표 개선으로 환원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당음료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강 친화적인 제품군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등 납부자 집단의 시장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집단적 효용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적 효용성의 요건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재원의 용도로 명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가당음료 소비와 특정 지역의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납부자 집단의 직접적인 효용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원을 활용하더라도, 가당음료와 직접 연관된 비만 및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기능이 특화된 필수 의료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납부자 집단과의 ‘특별한 긴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가당음료에 대한 수요 감축

을 통해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설 목적이 명확하고, 건강증진기금에 귀속되어 비만 예방·관리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 목적의 투명성 및 재원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부담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한다는 입장임.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u>97.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4</u> <u>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u>

문의처
02)6788-5153